

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는 2023. 1. 18. 작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3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023. 1. 19. ~ 2. 3),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3.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대상 명확화

- 최근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해외자회사의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방식을 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으로 변경하였는데(법인세법 제18조의4, 제57조 제7항 신설), 이와 관련하여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외자회사 요건과 익금불산입 제도의 적용이 제외되는 배당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개정안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10% 이상의 출자지분을 보유하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의 95%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다만, ① 수동적 업종(임대업 등) 또는 수동소득(이자 및 배당 등)을 위주로 영위하는 해외자회사(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가 적용되는 해외자회사)의 실제 세부담율이 15% 이하인 경우의 수입배당금액과 ②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은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신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1주당 순손익 계산시 익금불산입된 해외자회사 배당액이 포함됨(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개정).

해외자회사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 완화, 주식 취득시기 명확화

- 최근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해외자회사의 배당금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요건 중 지분율 요건을 25%에서 10%로 완화하였는데(법인세법 제57조 제5항 개정), 이와 관련하여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외자회사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시행령에서도 지분율 요건을 25%에서 10%로 완화하고,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했는지 여부를 계산할 때 적격 구조조정(합병·분할·현물출자)으로 해외자회사 주식을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받기 전 법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함(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9항 개정).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

- 최근 상증세법 개정을 통해 특수관계법인과과의 거래를 통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에 대하여 과세할 때 사업부문별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및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데(상증세법 제45조의3 제1항 개정), 이와 관련하여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 요건, 특수관계거래비율,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사업부문별 증여의제이익 과세를 위해서는, (i) 일감몰아주기 관련 사업부문과 그 외 사업부문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고, (ii) 사업부문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이상으로 구분하여야 함(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신설).
- 증여의제이익은 사업부문별 매출액에서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특수관계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할 때 과세되는데, 이 때 정상거래비율은 중소기업의 경우 50%, 중견기업의 경우 40%임. 한편, 대기업의 경우 (i) 특수관계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하거나 (ii) 20%를 초과하면서 특수관계매출액이 일정금액(= 1천억원 × 사업부문별 매출액 ÷ 총 매출액)을 초과하면 과세됨.
- 증여의제이익은 사업부문별 세후영업이익에 특수관계거래비율과 지분율을 곱하여 산출하는데, 이때 법인의 규모에 따라 특수관계거래비율(중소기업:50%, 중견기업:20%, 대기업:5%) 및 지분율(중소기업:10%, 중견기업:5%, 대기업:0%)에서 일정비율(위 괄호 안의 비율)을 차감하여 적용함. 한편,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사업부문이 2개 이상이면 사업부문별 증여의제이익을 합산하여 과세함.

통합고용세액공제 세부사항 규정

- 최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고용증대·사회보험료·경력단절여성·정규직전환·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를 통합하여 지원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신설되었는데(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신설), 이와 관련하여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적용과 관련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관련한 적용제외 업종(소비성서비스업), 상시근로자의 범위(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 계산 방법(해당 과세연도 매월 말 상시근로자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기본공제 추정세액의 계산방법(2년 이내의 기간 중 감소하는 경우 공제받은 금액 추정) 및 세액공제 신청방법(과세표준 신고시 세액공제신청서 제출)은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적용 방법과 동일하며 세액공제 적용 제외대상 특수관계인의 범위(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국제기본법에 따라 친족관계인 사람) 및 원천징수 사실 확인 방법(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통한 확인)은 기존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의 적용 방법과 동일함.
- 현행법과 비교하였을 때 우대공제 대상인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연령 범위가 29세에서 34세로 확대되었고, 대상 범위에 경력단절 여성이 추가됨(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 신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완화

-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요건으로 해외사업장 양도·폐쇄·축소 완료 후 국내사업장 신설 완료기한을 2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3년 이내로 완화하였고, 기존 국내 사업장 내 유희공간에 사업용 고정자산 수량이 증가하는 경우도 증설의 범위에 포함하였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1 개정). 국내사업장 신증설 완료기한을 연장하고 증설의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유인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 인정 확대

-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의 대손 발생 시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채무보증에 '해외자원개발사업자 (해외자원개발을 하는 해외건설사업자 포함)가 해외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해외 현지법인에 행한 채무보증'이 추가됨(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 개정).

벤처펀드에 출자한 적격펀드의 벤처기업 주식 거래·평가 손익의 비과세 허용

- 현행법은 적격펀드의 벤처기업 주식 거래 및 평가 손익 비과세 요건 중 주식 취득방법으로 ① 적격펀드가 직접 취득하는 경우, ② 자본시장법상 펀드를 통해 취득하는 경우만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벤처펀드를 통해 벤처기업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비과세가 적용되도록 함(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개정). 참고로 벤처펀드란 벤처투자법상 벤처투자조합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의미함.

기업상속공제 제도 합리화

- 현행법은 기업상속공제 요건 중 피상속인의 지분율에 관하여, ① 최대주주이면서 ②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의 50%(상장법인의 경우 30%) 이상을 ③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피상속인 지분율 요건을 발행주식총수의 40%(상장법인의 경우 20%)로 완화함(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개정).

증여재산 취득시기 명확화

- 현행법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등기·등록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등기·등록 접수일'로 변경하였음(상증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 개정). 증여재산의 취득시기가 명확해져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분쟁의 소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제외 중견기업 범위 설정

- 최근 상증세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최대주주 주식도 20%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음(상증세법 제63조 제3항 개정). 이와 관련해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할증평가 제외 중견기업의 범위를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이 발행한 주식'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함(상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7항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 범위 현실화

-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의 범위를 '15세 이상 29세 이하'에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8항 제1호 개정). 이로 인하여 '청년' 상시근로자 수 등을 세액감면의 요건 중 하나로 규정한 각종 세액감면제도의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것 예상됨.

일시적 2주택 양도세, 증부세 특례 처분기한 연장

- 1세대 1주택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일정한 기한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 현행법은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양도기한을 (i)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년, (ii) 그 외 나머지 경우에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주택 소재지 구분없이 3년으로 양도기한을 완화함(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1항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위한 주택수 산정 시 일시적 2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종전주택 처분기한도 2년에서 3년으로 완화함(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1년 연장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2주택자의 경우 20%, 3주택자의 경우 30% 추가로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를 배제하는 기한을 2023. 5. 9.에서 2024. 5. 9.로 1년 연장함(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2의2호 등 개정)

세법상 특수관계인 중 친족 범위 합리화

- 현행법상 친족으로 규정된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 변경하여 적용범위를 축소하고,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를 새롭게 친족의 범위에 추가함(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Contacts

정재웅

T. (+82) 2 6003 7049

파트너변호사

E. jwjeong@yoonyang.com

전완규

T. (+82) 2 6003 7121

파트너변호사

E. wkjeon@yoonyang.com

김용택

T. (+82) 2 6003 7076

파트너변호사

E. ytkim@yoonyang.com

정종화

T. (+82) 2 6003 7794

파트너변호사

E. jhjung@yoonyang.com

허시원

T. (+82) 2 6182 8120

파트너변호사

E. swhuh@yoonyang.com

이정렬

T. (+82) 2 6182 8144

파트너변호사

E. jyl@yoonyang.com